

재벌체제와 경제력 집중

2009년 2월

김진방

-목 차-

I. 재벌체제

재벌체제의 의미

재벌의 소유와 지배

II. 재벌문제

경제력 집중

지배력의 대물림

소유지배괴리와 대리인문제

III. 삼성공화국

삼성부조리

삼성커넥션

삼성이데올로기

IV. 경제력 집중 현황

대기업 일반집중

상위 재벌그룹의 자산총계

상위 재벌그룹의 매출액

V. 흔들리는 재벌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제도

금산분리

독약증권과 차등의결권

부록 1:

부록 2:

재벌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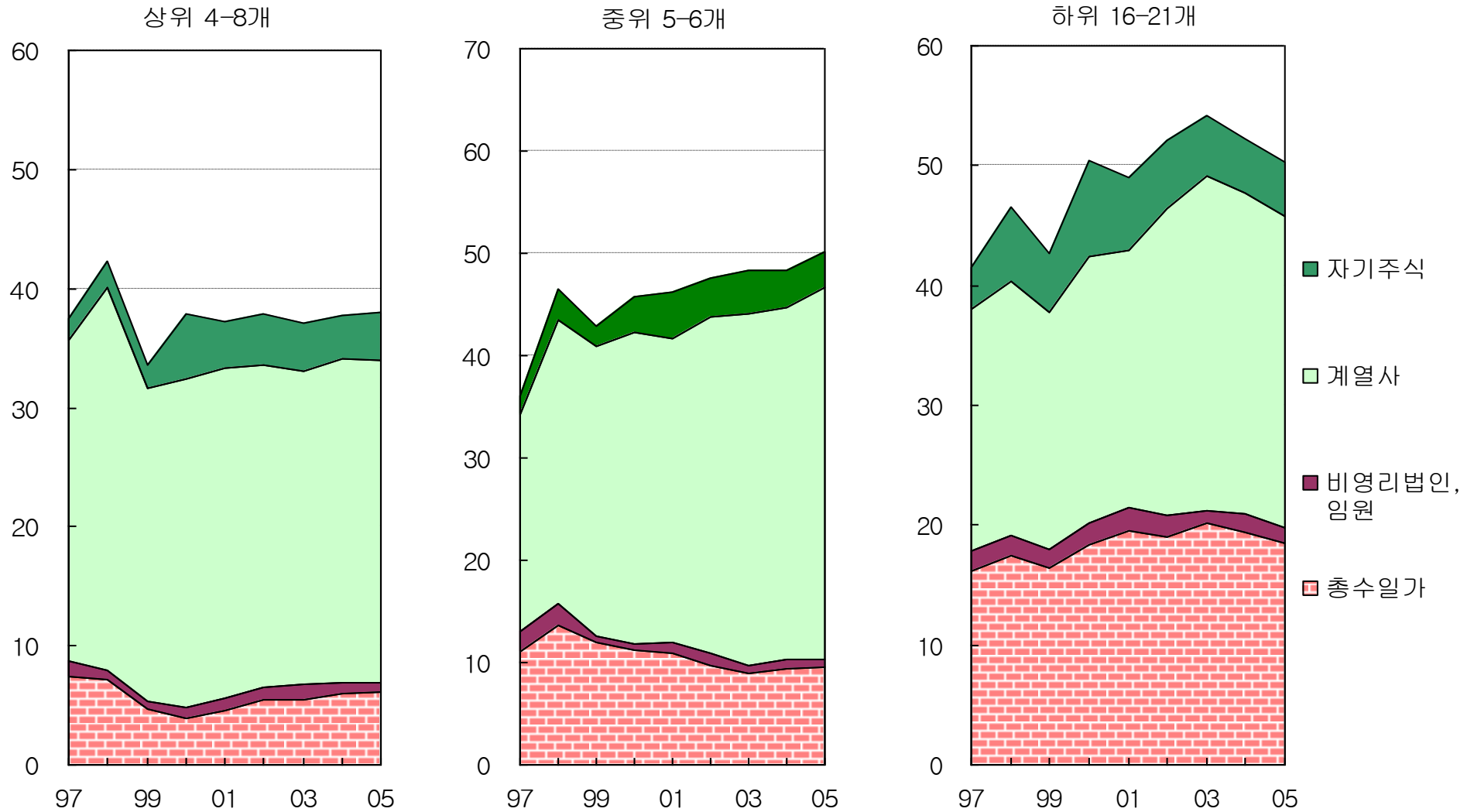
◇ 재벌체제의 의미

- cf. 재벌, 재벌총수, 재벌기업, 재벌그룹
- 현상: 황제경영, 선단경영, 문어발 확장, 시장집중(독과점), 일반집중
- 본질: 소수의 개인이 적은 지분을 가지고서 많은 대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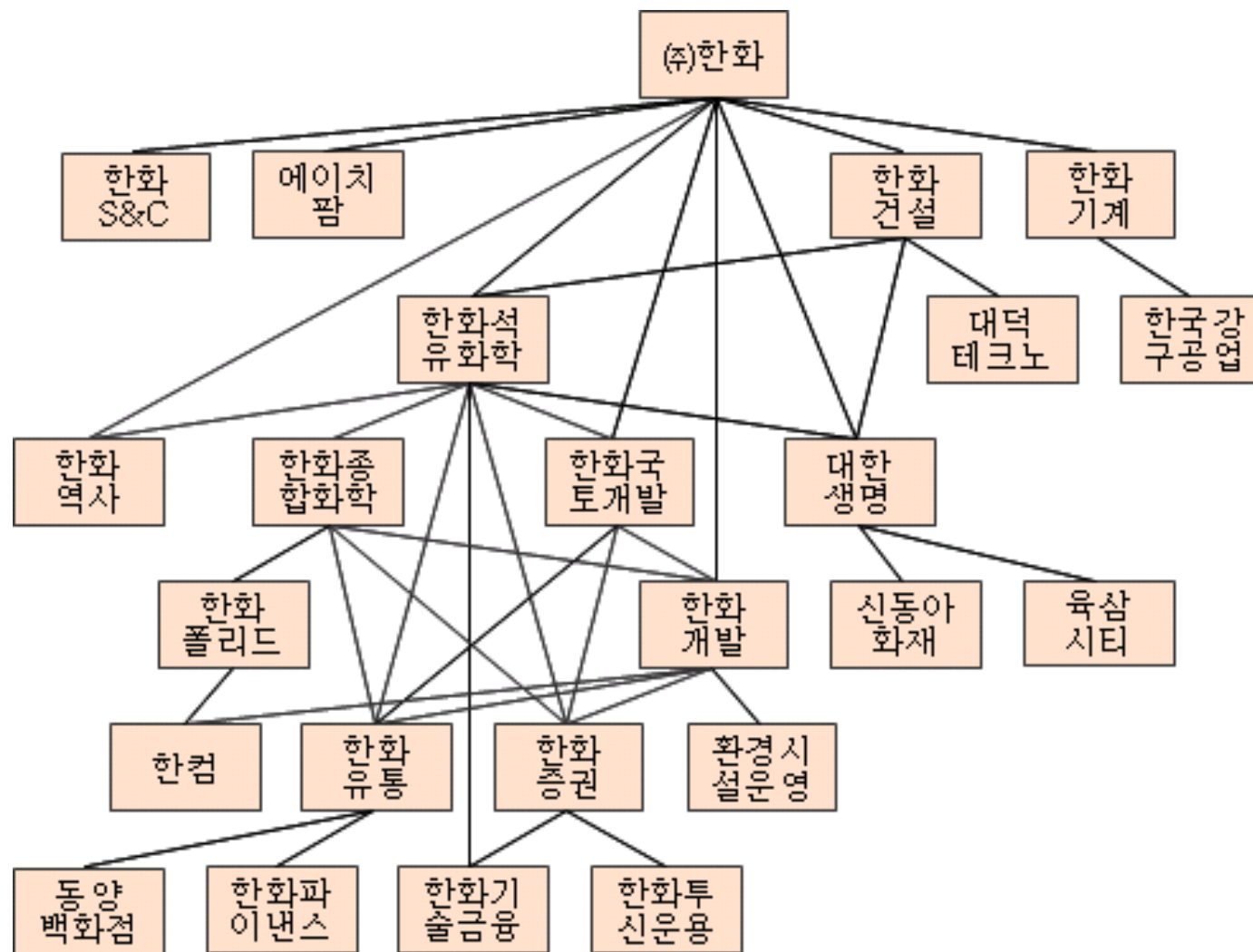
◇ 재벌의 소유와 지배

-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8 개집단 812 개사)의 경우, 내부지분율은 50.95%로서 총수일가(총수+친족)지분 4.23%, 계열회사 지분 44.44%, 기타 지분(비영리법인, 임원 등) 2.29%로 구성” (2008 년 4 월 기준 공정위 발표)
- 다단계출자, 교차출자, 순환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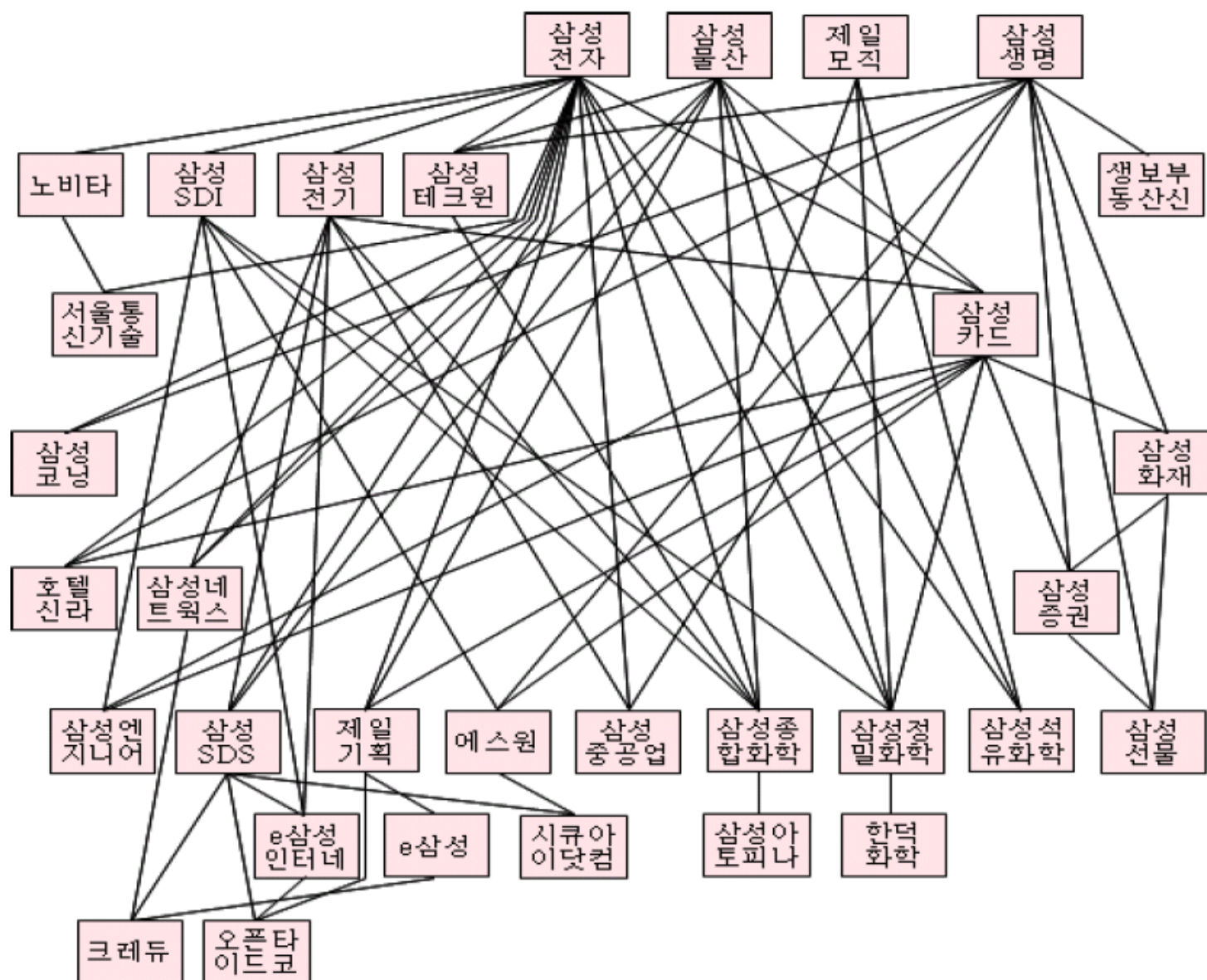
<그림 1> 30 대 재벌그룹의 내부지분 (1997-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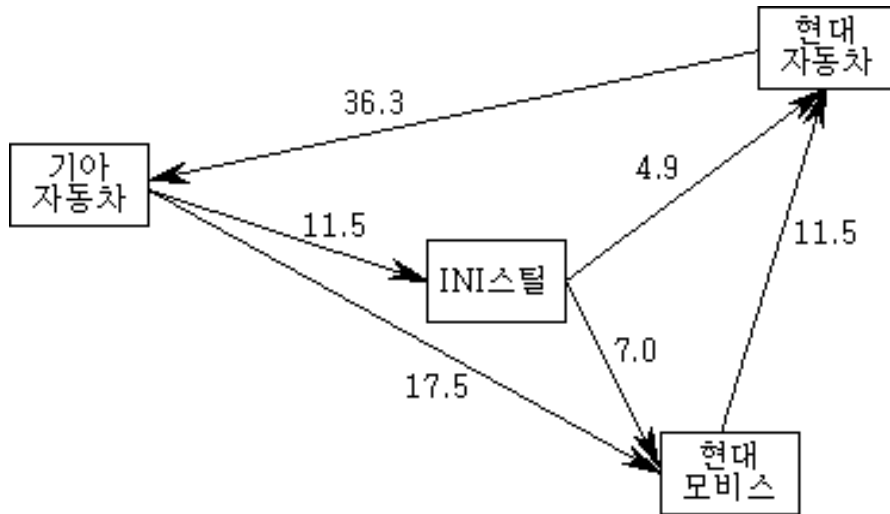
<그림 2> 한화그룹의 계열사 출자 (2003년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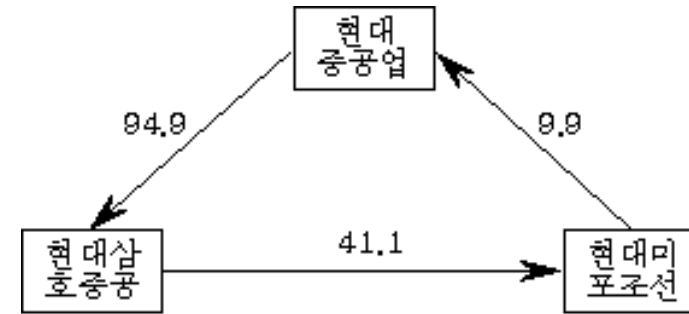
<그림 3> 삼성그룹의 계열사 출자 (2003년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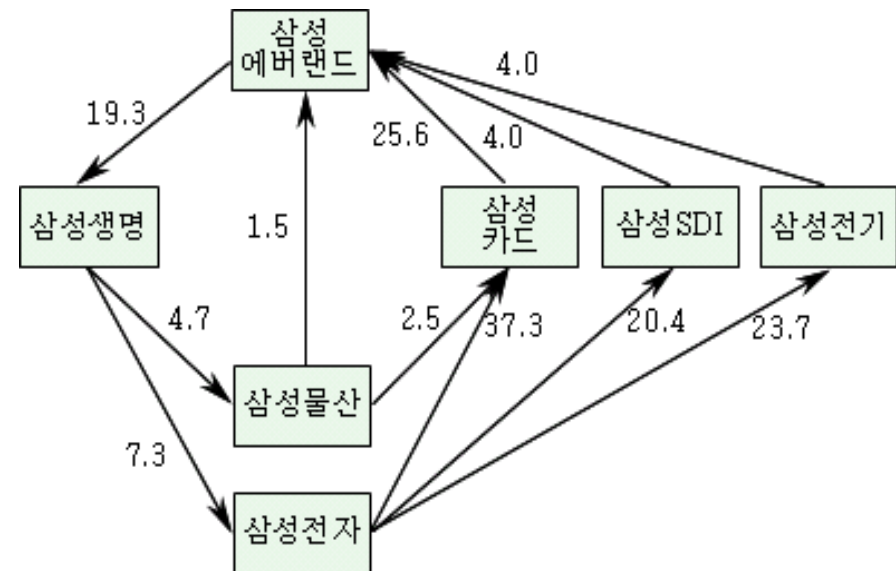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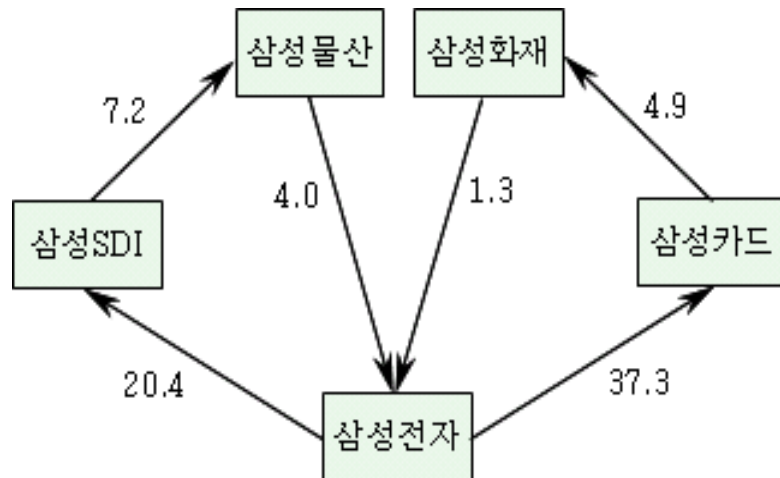
<그림 4a>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2005년 말)



<그림 4b> 현대중공업그룹 순환출자 (2005년 말)



<그림 4c> 삼성그룹의 순환출자(2007년 9월)



재벌문제

◇ 경제력 집중

- 소수의 **개인**이 많은 대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
- 대기업집단을 지배함으로써 **경제**를 지배
- 기업과 경제를 넘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영향력 행사 (예: 삼성공화국 현상)
- 경제의 **효율**과 **안정**을 훼손하고 사회의 **건강**을 위협

◇ 지배력의 대물림

- 총수일가가 소유하는 주식의 가치보다 총수가 행사하는 지배력의 가치가 훨씬 크기에 주식과 함께 지배력을 자녀에게 넘기려 함
-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주식 증여, 변칙에 의한 지배력 승계
- 기업과 경제의 위험 요인

◇ 소유지배과리와 대리인문제

- 소유지배과리: 개인 혹은 가족이 적은 지분을 소유하고서도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
- 대리인문제: 기업의 수익과 성장보다는 총수의 지배력 강화와 확대를 추구하고, 기업의 이윤과 가치보다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지배력을 행사
- 문제의 유형 1: 주식거래에 의한 탈취(예: 삼성에버랜드)
- 문제의 유형 2: 계열회사 사이의 내부거래에 의한 빼돌리기(예: 현대글로비스)

삼성공화국

◇ 삼성부조리

- 소유와 지배: 적은 총수일가 지분, 복잡한 계열사 출자, 금융회사를 통한 지배
 - 복잡한 계열사 출자는 회사의 공식 지배기구(주주총회, 이사회)를 무력화하고 총수의 전횡과 불법을 가능하게 함
 - 복잡한 계열사 출자에 의해 중층적으로 분산된 외부주주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규율의 동기와 수단을 상실
 - 금융회사를 통한 소유와 지배는 금산분리 원칙과 양립 불가
- 편취와 탈세(별첨)
- 금산분리 관련 법규 위반과 왜곡(별첨)

◇ 삼성커넥션

- 참여연대, 「삼성보고서①: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2005.
- 참여연대, 「삼성보고서②: 'X 파일'이 신문에서 사라진 이유」, 2005.

◇ 삼성이데올로기

- 가족기업론과 선단경영론
 - "집단형 소유기업이 높은 경영성과를 기록"
 - "소유주의 지배권이 급격히 약화되면 ... 투자에 대한 의욕을 상실"
- 민족자본론과 역차별론
 - "국내자본은 경영권시장...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 "외국 펀드에게는 산금분리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 투자부진론과 재벌강화론

- “한국의 설비투자 부진이 심각”하며, “대기업 역시 부진”

-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친기업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

경제력 집중 현황

◇ 대기업의 출하액(GDP 대비 %)

연도	80	90	92	94	96	97	99	01	02	03	04	05	06
50 대 기업	30.0	30.0	32.0	32.2	34.4	37.1	38.0	36.8	35.7	36.6	38.5	38.9	39.2
100 대 기업	39.0	37.7	39.2	39.2	41.2	44.2	45.1	43.7	42.5	43.2	45.0	45.5	45.7

자료: 공정위, 「2006 년 우리나라 시장구조 분석결과」, 2008.11.17

◇ 재벌그룹의 자산총계 (GDP 대비 %)

	`94	`96	`98	`00	`02	`03	`04	`05	`06	`07
범 4 대	29.80	37.27	49.54	47.33	37.83	39.52	40.23	43.25	45.41	49.04
범 8 대	37.97	45.89	59.49	57.66	47.05	49.09	49.95	53.44	56.40	60.73
범삼성	8.84	12.19	15.38	13.44	12.41	13.09	13.64	14.63	15.83	16.72
범현대	10.60	11.77	17.81	17.36	10.59	11.11	10.87	11.88	12.42	13.77
범 LG	6.66	8.25	9.84	8.53	8.49	8.98	9.65	10.02	10.14	10.79
SK	3.69	5.06	6.51	8.00	6.35	6.35	6.08	6.72	7.02	7.76

주 1) 8 대 재벌그룹은 범삼성(삼성, 신세계, CJ, 한솔, 중앙일보), 범현대(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 현대오일뱅크,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범 LG(LG, GS, LS), SK, 롯데, 범한진(한진, 한진중공업), 한화, 두산.

자료: 경제개혁연대, 「2008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 다각화 현황 분석」, 2009.

◇ 재벌그룹의 매출액 (GDP 대비 %)

	`94	`96	`98	`00	`01	`02	`03	`04	`05	`06	`07
범 4 대	38.40	45.43	56.01	61.44	53.71	49.55	42.18	46.95	48.98	50.22	50.72
범 8 대	44.46	52.02	62.71	68.31	60.50	56.36	48.46	54.41	56.86	58.14	59.11
범삼성	12.52	13.96	17.26	19.61	17.09	18.21	13.75	15.63	15.85	15.96	16.23
범현대	13.31	15.15	18.65	21.71	16.81	12.08	11.08	12.15	12.92	13.27	13.78
범 LG	8.31	10.40	12.54	12.28	12.01	11.71	10.72	12.22	12.27	12.74	13.50
SK	4.26	5.92	7.57	7.85	7.80	7.55	6.63	6.95	7.94	8.25	7.21

자료: 경제개혁연대, 「2008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 다각화 현황 분석」, 2009.

◇ 재벌그룹의 투자 (GDP 대비 %)

	`94	`96	`98	`00	`01	`02	`03	`04	`05	`06	`07
범 4 대	20.56	35.16	32.35	26.33	20.34	16.44	24.96	34.20	35.93	35.13	32.40
범 8 대	23.96	39.21	34.25	29.32	22.63	18.32	27.37	36.85	39.37	38.96	37.54
범삼성	9.73	13.08	9.56	9.41	8.70	7.71	11.87	15.99	16.47	17.75	15.48
범현대	5.14	9.59	12.76	7.27	3.79	0.22	4.35	6.13	6.55	5.81	6.29
범 LG	3.88	7.48	6.31	5.47	4.63	4.89	5.67	8.60	9.83	8.55	7.07
SK	1.81	5.01	3.71	4.17	3.22	3.61	3.08	3.49	3.09	3.02	3.56

자료: 경제개혁연대, 「2008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업종 다각화 현황 분석」, 2009.

흔들리는 재벌 정책

◇ 출자총액제한제도(공정거래법)

- 의의: 재벌기업의 출자비율(q)를 높이지 못하게 하여 재벌의 소유지분율(w)을 높이거나 내부지분율(x)을 낮추도록 하는 제도

$$\frac{1-w}{1-x} = 1+q$$

- 소유지분율(w)을 높이는 것은 자본의 규모 및 지배의 크기를 줄이는 것
- 내부지분율(x)을 낮추는 것은 지배의 세기를 줄이는 것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총수에 의한 지배의 크기 또는 세기를 줄임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제도
- 제도의 변천: 도입(1986), 강화(1994), 폐지(1998), 재도입(1999), 완화(2002), 대폭 완화(2007), 폐지안 국회 상정(2008)

◇ 지주회사 규제(공정거래법)

- 의의: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데 가장 편리한 수단이 될 수 있기에 1988 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명시적으로 금지
 - 1998 년 지주회사를 허용하되 부채비율, 출자단계(예: 증손자회사), 출자관계(예: 자회사 사이의 출자, 순환출자) 등을 제한함으로써 폐단을 억제

◇ 금산분리(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산법)

- 의의: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원칙인 동시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
- 공정거래법: 금융회사 소유 비금융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금지
- 금산법: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

-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금지

◇ 지배력 강화 수단(상법, 증권거래법)

- 차등의결권
- 독약증권

삼성부조리

총수일가의 편취와 탈세

1) 삼성에버랜드

- 1996 년 이재용, 이부진 외 2 인이 실권 CB 를 인수하고, 이를 근거로 신주 125 만 주를 주당 7700 원에 인수하여 64.0%의 지분을 확보
 - ※ 그 전에는 중앙일보사(48.2%), 제일모직(14.1%), 이건희(13.2%), 삼성물산(5.2%) 등이 대주주
- 1998년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중앙일보사 소유의 34만 주를 주당 10만 원에 매수
 - ※ 삼성카드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54.4%), 삼성물산(14.4%), 삼성전기(21.45%)
 - ※ 삼성캐피탈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74.8%), 삼성물산(25.0%)
- 1999년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삼성전기, 삼성SDI 등이 신주 50만 주를 주당 10만 원에 인수
- 2006년 기소되어 2007년 1, 2심에서 삼성에버랜드 이사 허태학과 박노빈의 유죄 판결

2) 삼성생명

- 1997-98년 이건희와 에버랜드가 각각 300만 주(16.0%)와 387만 주(20.7%)를 주당 9000원에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30여명으로부터 매수
- 1999년 이건희 소유의 46만 주가 삼성광주전자, 삼성전기, 삼성정밀화학, 삼성SDS, 제일기획에 주당 70만 원에 매도
- 1999-2000년 이건희는 350만 주를 주당 70만 원으로 평가하여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제공
- 2006년 이종기(이건희의 매제) 소유의 94만 주(4.7%)를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
- 종합하면, 1994년 전현직 임원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은 모두 1104만 주(59.0%)인데, 1997-98년에 그 중 686만 주가 이건희와 삼성에버랜드 명의로 바뀌었고, 2006년에 94만 주가 삼성생명 공익재단 명의로 바뀌었고, 나머지 324만 주(16.2%)가 여전히 전현직 임원 명의로 있음

3) 서울통신기술

- 1996년 이재용과 박명경이 제3자 배정의 CB를 인수하고, 그것을 근거로 각각 서울통신기술 신주 30만 주와 9.6만 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하여 50.7%와 15.9%의 지분을 확보
- 2000년 박명경은 소유주식을 주당 7만 원에 노비타에 매각
- 서울통신기술의 매출액은 1996년의 689억 원에서 2001년의 1996억 원을 거쳐 2006년의 3238억 원으로 증가
- 1999년 삼성전자의 H/A 사업을 서울통신기술에 양도
- 2001년 서울통신기술 매출액 1996억 원 중 1528억 원이 삼성전자 등 계열사와의 거래
- 2005년 참여연대가 서울통신기술 이사진을 배임혐의로 고발

4) 삼성SDS

- 1996년 삼성물산과 삼성전기가 실권한 178만 주를 이재용과 이부진 외 2인이 주당 5000원에 인수하여 14.8%의 지분을 확보

- 1999년 제3자 배정 BW를 인수하고, 그것을 근거로 신주 322만 주를 주당 7150원에 인수하여 32.6%의 지분 확보 가능(장외 거래가격 54000원)
- 1999년 참여연대의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가처분소송과 법원의 기각(당사자 부적격)
- 1999년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이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불공정거래규제조항 적용 불가)
- 2001년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삼성의 행정소송 제소와 패소 그리고 항소 취하(2006년)
- 2001년 참여연대의 이사진에 대한 배임혐의 고소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
- 2002년 참여연대의 헌법소원

5)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 **에스원**: 1994년 이재용이 최용순과 중앙개발 소유 12만 주를 23억 원에 매수하고, 1996년의 유무상증자에서 신주 6만 주를 55억 원에 인수하여, 에스원 상장(1996년 2월) 후 356억 원에 매각(차익 288억 원, 수익률 353%)

- **삼성엔지니어링**: 1994-95년 이재용이 신주인수권 매입하여 30만 주를 15.4억 원에 인수하고, 1995년의 유무상증자에서 신주 13.3만 주를 3.2억 원에 인수하여, 삼성엔지니어링 상장(1996년 12월) 후 281억 원에 매각(차익 263억 원, 수익률 1413%)
- **제일기획**: 1996년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과 이종기, 강종구 등이 실권한 CB를 이재용이 인수함으로써 신주 10만 주를 10억 원에 인수하고, 1996년 유상증자에서 신주 20만 주를 10억 원에 인수하여, 제일기획 상장(1998년 3월) 후 157억 원에 매각(차익 137억 원, 수익률 680%)

6) e삼성, e삼성인터내셔널

- 2000년 4월 설립: e삼성(이재용 75%, 에버랜드 25%), e삼성인터내셔널(이재용 60%, 에버랜드 25%, 삼성SDS 15%)
- 2001년 부당지원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삼성의 방해
- 2001년 7월 이재용의 지분을 계열사가 매입: e삼성(제일기획 75%, 에버랜드 25%), e삼성인터내

셔널(에버랜드 25%, 삼성SDS 53%, 삼성SDI 11%, 삼성전기 11%)

- 제일기획, 삼성SDS의 주가가 각각 760억 원, 4440억 원 감소(지수변동분 제외 시 각 16.3% 하락)
- 2005년 참여연대가 제일기획, 삼성SDS 등 계열사 임원과 이재용을 배임 및 배임교사 혐의로 고발

삼성부조리

금산분리 관련 법규 위반과 왜곡

1) 금융회사의 의결권행사 제한

□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1987년 신설: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005년 개정: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또는 사업양도 등 3개 사안에 관해서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하여 15% 이내의 의결권 행사 가능

□ 삼성의 헌법소원 제기와 취하

- 2005년 6월 삼성생명, 화재, 물산이 재산권·평등권 침해를 사유로 헌법소원 제기
- 2006년 8월 헌법소원 취하

2) 금융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997년 3월 시행)

- 제 24 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 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 사실상 지배하는 것

□ 삼성 계열사의 금산법 위반

- **삼성카드**: 에버랜드 주식을 1998 년에 20 만 주, 1999 년에 15 만 주를 취득하여 14.0%를 소유
- **삼성캐피탈**: 에버랜드 주식을 1998 년에 14 만 주, 1999 년에 15 만 주를 취득하여 11.6%를 소유

- **삼성생명**: 1997 년 3 월 현재 삼성전자 주식 1025 만 주(8.9%) 소유
- **삼성생명**: 1997 년 상반기 중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39 만 주를 취득하여 삼성화재와 함께 7.5%를 소유
- **삼성생명**: 1997 년 상반기 중 에스원 주식 22 만 주 추가 취득하여 10.0% 소유
- **삼성화재**: 1997 년 상반기 중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12 만 주를 취득하여 삼성생명과 함께 7.5%를 소유
- **삼성화재**: 1998 년 11 월 제일기획 주식 14 만 주(9.7%) 취득

□ 금산법 파동

- 금산법 개정안(2004 년 11 월): 부칙 제 2 조(경과규정)를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소유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 초과소유 허용

- 금산법 개정(2006 년 12 월): 삼성생명의 의결권행사 제한을 공정거래법의 15% 조항에 연동함으로써 금산법의 5% 조항 무력화
- 금산법시행령 개정안(2007 년 2 월):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초과소유 허용

3) 금융지주회사의 지정 및 행위제한

□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의 금융지주회사 정의

- 법 제2조: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조: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 금융지주회사 행위 제한

-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 에버랜드의 위반과 편법

- 2003년 말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장부가액(1.7조 원)이 에버랜드 자산총계 (3.2조 원)의 절반을 초과
- 2004년 4월 공정위는 전환신고를 명령하면서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적용을 검토했으나, 금감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벌칙) 의 집행을 유예
- 2004년 6월 회계처리 변경으로 에버랜드 소유 삼성생명 주식의 장부가액을 1.2조 원으로 축소

- 2004년 12월 에버랜드 소유 삼성생명 주식 중 120만 주(6%)를 제일은행에 신탁
- 2005년 4월 이건희 회장 에버랜드 이사직 사임
- 2005년부터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을 적용하여 삼성생명주식 평가(금감원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에 떠넘기기)

□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지정 시 필요한 조정

- 삼성생명은 삼성물산 주식(4.7%)과 삼성전자 주식(7.3%)을 소유할 수 없고,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주식(1.3%)를 소유할 수 없음
-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을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